#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4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김한규·신정훈·김성환

김 윤・박홍배・채현일

윤건영 • 이재관 • 오기형

강준현 • 주철현 • 이병진

전진숙 · 문대림 · 장철민

박희승 · 김영환 · 박지원

서미화 · 서영교 · 이광희

문금주 • 오세희 • 권향엽

위성락 • 추미애 • 임미애

최민희 의원(2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 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 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

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 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교제폭력범죄"란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죄를 말한다.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 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 교제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2. 교제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3. 교제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스토킹범죄를"을 "스토킹범죄 또는 교제폭력범죄를"로 한다.

제2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4제2항 중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의8 중 "제5조제6항·제8항"을 "제5조제7항·제9항"으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중 "스토킹행위자에"를 "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에"로 한다.

제31조의6제1항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 또는 제9조제2항제3호의2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스토킹행위자"를 각각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여부를"을 "여부 또는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교제폭력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2호 또는 제9조제2항제2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을"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를 제4호 또는 제9조제2항제4호에"로 한다.

제31조의8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행위자"를 각각 "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범죄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혐의"를 "혐의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제폭력범죄혐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2"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행위자"를 "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토킹

범죄사건"을 "스토킹범죄사건 또는 교제폭력범죄사건"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스토킹행위자"를 "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1.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 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 -----강도범죄, 스토킹범 범죄를 말한다. 죄 및 교제폭력범죄-----2. ~ 3의4. (생략) 2. ~ 3의4. (현행과 같음) <u><신</u> 설> 3의5. "교제폭력범죄"란 「스토 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의 죄를 말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제폭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교제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 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 <u>⑥</u> · <u>⑦</u> (생 략)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수 없다.
-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 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 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

<u> </u>
2. 교제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
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
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제
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교제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
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u>=</u>
항과 같음)
⑨제6항까지의
<u></u>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
른 사람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스토킹범죄를</u> 저지른 사람: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 함할 것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 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 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 (현행과 같음)
2. 스토킹범죄 또는 교제폭력범
<u> 죄를</u>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 1. ~ 5. (현행과 같음)
6.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
<u>는 사람</u>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 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 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 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 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 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 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 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피 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 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 로 본다.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교제폭력범
죄를 저지른 사람
네21조의8(준용규정)
제5조제7항·
제9항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 및 교제

####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한다)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장에서 "보호관찰소(이하 이장에서 "보호관찰소"라한다)의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한다.

②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u>스토</u> <u>킹행위자</u>는 법원이 지정한 일 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 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

<u>폭력행위자에</u>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스토킹범
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
호의2 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u> 2에</u>
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② <u></u>
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 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 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 다.

1. ~ 6. (생략)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u>스토킹</u>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u>스토킹</u>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가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u>여부 또는 제9조제2</u>
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교제폭력행위자의 잠정조치 이
행 여부를
1. ~ 6. (현행과 같음)
④ <u>스토킹</u>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 1. (생략)
- 2.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 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 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생략)
-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 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 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u>「스토</u>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I. (연행과 같음)
2
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호 또는 제9조제2힝
제2호를

3.						「스]	토킹
	<u>범</u> 결	티	및	교제	폭력범	죄의	처
	벌	등	에	관한	법률_	제	9조
	<u>제5</u>	항	을-				

- 4. (현행과 같음)
- 시 스토<u>킹행위자</u>가 소재한 현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제4호 또는 제9조제2항 제4호에-----

⑥ ~ ⑧ (생 략)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 제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 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 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2.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제9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⑥ ~ ⑧ (현행과 같음)
31조의8(스토킹행위자 및 교제
<u>폭력행위자</u> 수신자료의 보존·
사용・폐기 등) ①
스토킹행
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
<u>스</u>
트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
<u>.</u>
② 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
행위자
1.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u>
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이 ㄸ느 게?
<u>혐의 또는 제2</u>
조제5호에 따른 교제폭력범죄
<u>혐의</u>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4. (생략)
- ③ (생략)
-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u>스</u> <u>토킹범죄사건</u>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 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 3. (생략)

제36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 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 는 자가 제16조제2항 또는 제3 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호의2,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의2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
<u>력행위자</u>
1. (현행과 같음)
2
범죄사건
3. (현행과 같음)
N36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
•